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매우낮은위험]

GS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GS튼튼개인MMF1호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GS튼튼개인MMF1호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GS튼튼개인MMF1호 (AW458)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인용),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GS자산운용 (주) (02-6910-11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년 2월 1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2월 27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www.gsasset.co.kr),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운용전문인력
6. 투자실적추이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II.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만기가 짧은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 자산관리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 | 투자대상 | 주요내용 |
|---|--------------|---|
| ① |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 |
| ② | 채무증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 ③ | 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 ④ | 단기대출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 ⑤ | 금융기관에의 예치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
| ⑥ | 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산총액의 5% 이내) |
| ⑦ | 전자단기사채 등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

※ 위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등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만기가 짧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수익자에게 유동성 자금관리 수단이 될 수 있는 초단기금융투자상품

① 적극적 이자수익 추구

- 금리가 높고 안정성 높은 전자단기사채 및 CP, ABCP에 일정부분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자수익 추구

② 유동성 강화

- 일정 부분의 유동성자산(금융채 및 CD, 예금, 콜 등)을 편입, 운용함으로써 수익자의 환매요청에 대처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③ 철저한 신용(Credit) 관리

-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Credit) 분석을 별도로 하여 금리뿐 아니라 안전성을 감안하여 투자

※ 비교지수 : KIS CD 3M지수*50% + KIS Call지수*50%

주1) 비교지수 선정사유 : KIS CD지수 및 KIS Call지수는 KIS Pricing(KIS 채권평가)에서 발표하는 단기금융시장을 반영한 유동성지수로서 각 유동성자산(CALL, CD, CP) 수익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단기금융시장과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자산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지정하였습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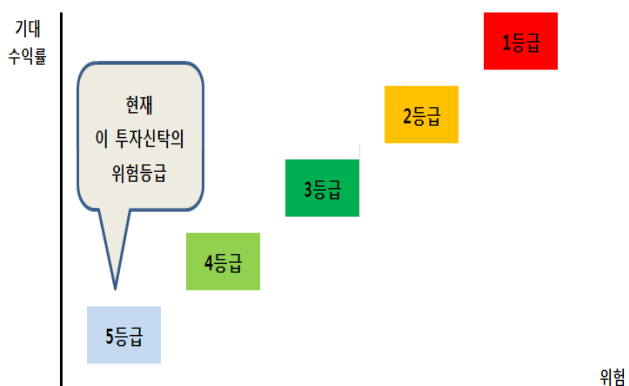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위험 주요내용 |
|-----------------------------|---|
| 이자율변동위험 (시장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사항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위험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격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법시행령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위험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가장높은 경우를 1등급으로 하여 가장 낮은 위험도를 나타내는 5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기준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채권 및 어음등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채권 및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으로 제한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는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시가평가도 배제되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장부가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며,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원금이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0.5%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실명의 개인에게만 판매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의 적정 비율을 선택함이 바람직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GS 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02.10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자산 규모 | |
| 김길영 | 1973 | 책임 운용 (채권운용 팀장) | 31개 | 29,509억 | - 서울대학교 농공(기계)학과 학사 - LG투자증권 채권트레이딩팀(3년 5개월) - LG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2년) -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1년 11개월)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2팀(2년 4개월) - 수협은행 자금부(2년 4개월) - GS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2014.01 ~ 현재) |
| 구경서 | 1978 | 부책임 운용 | 25개 | 2,918억 | -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 - 알리안츠생명 자산운용관리팀(1년 3개월)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4년 1개월) - 대신증권 채권운용팀(2년 9개월) - GS 자산운용 채권운용 (2014.02 ~ 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김길영운용역 - 1개, 500억 / 구경서운용역 - 0개, 0억]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Class)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부과기준 | - | 납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C | 제한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C-P |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 |
| 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 | | |
| S-P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Class) |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일반 사무관리 | 기타비용 | 총 보수 및 비용 | 증권거래비용 |
| 지급시기 | 매 3개월 | | |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 C | 0.12 | 0.25 | 0.02 | 0.01 | 0.005 | 0.405 | 0.001 |
| C-P | | 0.22 | | | 0.005 | 0.375 | 0.001 |
| S | | 0.10 | | | 0.005 | 0.255 | 0.001 |
| S-P | | 0.066 | | | 0.005 | 0.221 | 0.001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5) 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운용중인 타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시 실제 발생하는 기타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구분 | 1 년후 | 3 년후 | 5 년후 | 10 년후 |
|------------------|------|------|------|-------|
| Class C | 42 | 130 | 227 | 512 |
| Class C-P | 38 | 121 | 211 | 475 |

| | | | | |
|-----------|----|----|-----|-----|
| Class S | 26 | 82 | 144 | 325 |
| Class S-P | 23 | 71 | 125 | 282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 세

가.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됩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및 S-P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분리과세한도 |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
|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계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gs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1) 매입

-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조로 법인 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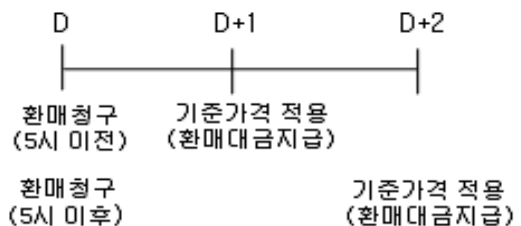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

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 지급 가능

-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규모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수익자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 집합투자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환매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Ⅲ 요약 재무정보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